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6일, 김정호의원 · 서왕진의의원 ·
정혜경의원 등 3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정호의원 · 서왕진의의원 · 정혜경의원)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어 왔고, 세계 각국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그 폐쇄를 서두르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의 폐쇄 등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총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석탄화력 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정책 수립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화력 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가속화된 석탄화력발전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시점에 조기 폐쇄하고, 그 대체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

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또한,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발전소 소재 지역 및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발전소 폐지지역 및 인접지역 지정, 국무총리 또는 소관부처 소속의 위원회 신설, 중장기 지원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안정(고용보조금, 전직 지원, 고용승계 등) 및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특례(국고보조금 인상, 조세 감면, 별도 기금 조성 등)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지역과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제정안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신설 및 특구 지정 규정이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승계 의무화나 특정 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의 목적 외 활용, 산업단지 입주 특례 등이 타 산업위기 지역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타 산업과의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제정안들의 지원 요건과 특례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단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